

誓 約 書

본인은 APEC 기업인 여행카드(ABTC, APEC Business Travel Card)를 보유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(이하 규정이라 한다)에 정한 목적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다.
2. 규정 제12조(효력의 상실) 제①항에 정하는 사유(소속회사의 파산, 퇴직, 해임등)로 카드발급시의 신분이 상실하는 경우, 소속기업(기관)의 대표에게 알리고, 신분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법무부장관(무역협회장을 경유)에게 카드를 반납한다.
3. 승인국가가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불법 취업행위를 하는 등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자필서명)

기업(단체)대표 서약

본인은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상기 카드 신청인이 ABTC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없음을 보증하며,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본 기업(단체)에 대한 카드발급 취소 및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한다.
2. 상기 신청인이 ABTC 발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휘·감독한다.
3. 규정 제12조에 따른 카드의 효력 상실 사유(퇴직, 해임등)가 발생한 경우 동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(무역협회장을 경유)에게 즉시 반납한다.

년 월 일

대표

(법인인감)

法務部長官 貴下